

특허와 실용신안

중소기업장려정책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체제도 매우 유사하다. 본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 할 목적으로 성립됐다. 특허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 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됨으로써 독점권이 부요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그러나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허제도의 보완차원에서 실용신안제도가 마련되게 됐다. 우리나라 실용신안 제도는 그 동안 선진 공업국의 기본 발명을 도입·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등록해 독점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왔다.

▲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발명인 반면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임에 비해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단지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 할 필요는 없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서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뉘 볼 수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 등록요건

특허법상 발명의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등

록요건은 각각 산업성, 이용성, 신규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해 고도할 필요가 있지만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해 고도할 필요는 없고 출원시점의 기술 진보 속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 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 권리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 공일로부터 15년, 출원일로부터 20년을 넘지 못한다. 반면에 실용신안권은 출원공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15년을 넘지 못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안이 발명보다 모방이 용이하며 제품수명이 짧다는 데 기인한다.

▲ 출원 및 심사 절차

특허 출원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 출원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해야 한다.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의 그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우선원기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이고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이다.